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4. 2. 17. 개정 판 (시행 2014. 3. 1.) → 2014. 9. 1. 개정 판 (시행 2014. 9. 1.)

바뀜 1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70/compare?from=420&to=421>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7:34:17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실험실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지원처장, 건축학과장, 기초의약과학과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화학과장, 안전관리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상 1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